

# 중앙과 지방의 유해화학물질관리 역할 배분

## 화학물질관리행정의 의의

-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큰 재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전면 개정하였으며, 2021년 4월 일부개정을 통해 법률 용어의 정비 및 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수준에 부합한 선진화된 화학물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됨
- 이외에도 체계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각 광역 단위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적용되는 매뉴얼을 작성·관리함

###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구 분	내 용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조례	• 광역 단위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예시)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매뉴얼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중앙과 지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역할

-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사무를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축소되었음
- 또한 2012년 9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구축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013년 7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2013년 9월 화학물질안전원 신설 및 2014년 개원하였음
- 중앙정부는 관련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사무가 환수된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이 대폭 감소하여 광역자치단체는 실무담당자 2명,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실무담당자 1명 수준이며, 배출시설 관리 등 다른 업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김하나 외, 2018)

### ■ 유해화학물질 관리 주체별 역할 변화 ■

개정 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후(화학물질관리법)	
업무	관리기관	업무	관리기관
유독물영업 등록·변경등록	지방자치단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환경청 (광역단위)
유독물 취급시설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자체방제계획 검토·수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수리	화학물질안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검토의견 제출)
보고·자료제출명령, 출입검사		보고·자료제출명령, 출입검사	환경청
행정처분		행정처분	

출처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 2017; 2; 최인수·김필두·이진만, 2017

### ■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 시 문제점 ■

- 유해화학물질 관리 단계에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련 정보공유,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문성,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차량 운반계획서 정보공유, ④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구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 대응 시에는 ①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명령 주체 정리, ② 소방본부 내 전문성 미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운반차량 외부에 정보 기재 미비 등이 해결될 필요가 있음

### ■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 문제점 ■

구 분	내 용	세부 내용					
관리 단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항 관련 정보공유 미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시 관련 정보공유 미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련 정보공유	<table border="0"> <tr> <td>행정처분</td> <td>• 행정처분 결과에의 정보접근 어려움</td> </tr> <tr> <td>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공유 한계</td> <td>•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공유 시 환경청으로부터 요약본만을 넘겨받음. 이로 인해 구체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주요 정보를 얻기 어려움</td> </tr> <tr> <td>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검토 한계</td> <td>•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공유 시 환경청으로부터 요약본만을 넘겨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 제출 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하기 어려움</td> </tr> </table>	행정처분	• 행정처분 결과에의 정보접근 어려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공유 한계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공유 시 환경청으로부터 요약본만을 넘겨받음. 이로 인해 구체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주요 정보를 얻기 어려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검토 한계
행정처분	• 행정처분 결과에의 정보접근 어려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공유 한계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공유 시 환경청으로부터 요약본만을 넘겨받음. 이로 인해 구체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주요 정보를 얻기 어려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검토 한계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공유 시 환경청으로부터 요약본만을 넘겨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 제출 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하기 어려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문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유해화학물질 취급차량 운반계획서 정보공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차량 운반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지 않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구축	• 시흥, 서산, 익산 등 7개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나, 더 많이 건립할 필요가 있음						
유해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명령 주체	• 현재 유해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명령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은 주로 소방서에서 담당하여 주민 대피 명령 시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음						
소방본부 내 전문성	• 유해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소방대원 부족						
사고 대응	유해화학물질 취급운반차량 외부에 위급 시 대응사항 기재 미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차량에 사고 발생 시 긴급히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대응 어려움					

## 합리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지역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시설 검사 결과, 행정처분 결과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때 공정도, 도면 등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청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 및 재난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기 때문에 주민대피에 대한 결정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무의 중앙 및 지방 역할 개선안

구 분	주 체	현 행	개선안
예방 및 대비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도 개선</li> <li>중앙-지방 유해화학물질 협의체 운영</li> <li>사고예방훈련 계획 및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유지</li> </ul>
	화학물질 안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검토 요청 시, 공정도, 도면 등 필요정보 포함 요약본 제출</li> </ul>
	지방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li> <li>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li> <li>보고·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li> <li>행정처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시설 검사 결과, 행정처분 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고지 의무 추가</li> <li>지방자치단체에 집중관리대상 사업장 합동검사 권한 부여</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지방 유해화학물질 협의체 참여</li> <li>광역단위 유해화학물질 협의체 운영</li> <li>현장대응 매뉴얼 등 지원 및 조치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유지</li> </ul>
대응 및 복구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수습 및 대응 등 총괄 및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li> <li>관계부처 협조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유지</li> </ul>
	소방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긴급구제통제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긴급구제통제단 운영</li> <li>주민보호 조치(대피명령)</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지역 내 재난 대응, 복구에 관한 총괄 및 지휘</li> <li>재난현장지휘본부 설치 및 대응</li> <li>긴급구조활동 지원</li> <li>주민보호 조치(대피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지역 내 재난 대응, 복구에 관한 총괄 및 지휘</li> <li>재난현장지휘본부 설치 및 대응</li> <li>긴급구조활동 지원</li> </ul>

#### 참고자료

김정숙·이재용[2021], 「합리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배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문  
보기

#### 내용문의

김정숙(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33-769-9846, jskim@krila.re.kr)

#### 지난호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적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권오철 선임연구위원)

원문  
보기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